

| | |
|------|----------------|
| 문서번호 | 기획예산과-104399 |
| 결재일자 | 2015. 12. 31. |
| 공개여부 | 대시민공개 |
| 방침번호 | 부구청장 방침 제1022호 |

| | | | | |
|-----|--------|--------|--------|--------------|
| 주무관 | 의회법무팀장 | 기획예산과장 | 기획경제국장 | 부구청장 |
| 윤주영 | 신수일 | 정광희 | 길수철 | 12/31 김경호 |
| 협 조 | | | | |

◁ 제2016-1차 ▷

규제개혁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보고



기 획 경 제 국

(기 획 예 산 과)

◁ 제2016-1차 ▷ 규제개혁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보고

『서울시 광진구 식품접객업영업자의 준수사항에 관한 조례』 제정안의
규제사무 신설에 대한 규제개혁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립니다

1 개 요

- **심사기간** : 2015. 12. 28(월) ~ 12. 30(수)
- **심사방법** : 서면 예비심사
- **심사위원** :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10명(당연직 4, 위촉직 6)
- **심사대상** : 식품접객업영업자의 준수사항에 관한 제정조례안
- **규제사무** : 안 제5조(안전기준), 안 제6조(지도감독)

2 심 사 결 과

- **비중요규제로 의결** : 재적위원 10명 전원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 **심사내용**
 - 주민들의 안전과 관련된 사항으로 규제신설이 타당하다는 의견
 - 본 규제심사 안건은 『행정규제기본법』 제11조제2항에 의거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받은 것으로 봄

※ 행정규제기본법 제11조 제2항(예비심사)

- 비중요규제로 결정된 규제는 위원회 심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규제개혁위원회 예비심사 수합결과

1. 심사안건

제5조(안전기준 등) 영업자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7 제6호타목7)에 따라 음향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안전기준에 따라 별도의 춤을 추는 공간이 아닌 객석에서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영업장의 바닥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산정한 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계 없이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안전관리 기준 등을 준수하되 다음 각 목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가. 정전이 있을 때 자동으로 켜지는 **비상조명등**을 출입구와 비상구에 각각 설치하여야 한다.

나. 화재 등 발생 시 위험을 즉시 인지할 수 있도록 **영상음향차단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소음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음시설**등을 설치하여 「소음·진동관리법」에서 정한 “생활소음·진동의 규제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지도·감독 등) 구청장은 제5조에서 정한 **안전기준 등의 이행여부를 연 2회이상 지도·점검** 할 수 있다.

2. 심사의견

| 구분 | 성명 | 심사의견 | 비고 |
|-----|-----|-------------|----|
| 위촉직 | 유왕진 | 비중요규제(원안의결) | |
| | 정영환 | 비중요규제(원안의결) | |
| | 최창희 | 비중요규제(원안의결) | |
| | 김찬동 | 비중요규제(원안의결) | |
| | 정혜선 | 비중요규제(원안의결) | |
| | 허진 | 비중요규제(원안의결) | |
| 당연직 | 김경호 | 비중요규제(원안의결) | |
| | 정찬모 | 비중요규제(원안의결) | |
| | 길수철 | 비중요규제(원안의결) | |
| | 김해성 | 비중요규제(원안의결) | |

붙임 심사의결서 10부. 끝.